

#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월 31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4년 1월 16일
- 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1. 31.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)

### □ 제안이유

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법인인 「강서대학교」와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운영사무의 지속성 확보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2항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, 동법 제7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#### 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시설장	소재지 (규모)	직원 현황	現 위탁현황	
				수탁법인명	수탁기간
강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	오현주	화곡로18길 14-5 (299.9㎡)	18명	강서대학교	2019. 5. 9. ~ 2024. 4. 30. (5년)

## 나. 민간위탁 사무 내용

-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·운영 전반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
-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-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, 일시 보호 지원
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 위기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

다. 위탁기간: 2024. 5. 1. ~ 2029. 4. 30.(5년)

라. 선정방법: 재계약<sup>1)</sup>

마. 소요예산: 5,584,036천원

(국비 1,103,032천원/ 시비 1,567,362천원/ 구비 2,913,642천원)

## 바.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: 2024년 3월
- 협약체결: 2024년 4월

---

1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: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 
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2, 부칙 제3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2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동의안은 「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」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, 운영사무의 지속성 확보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재계약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, 동법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 시설로서,
  - 현재 운영 법인인 「강서대학교」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, 2024년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사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인과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임
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 및 위기청소년 발견, 지역자원 연계 사업 등의 추진으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위탁 사무이며,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<sup>2)</sup>에 위탁하여 사무를 운영할 수 있음
-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, 수의 계약의 일종인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,
- 재계약을 위한 심의 시 수탁자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 적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, 향후 철저한 지도·감독으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2) 「청소년기본법」 시행령

제2조(청소년단체의 범위)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생략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**□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**

**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**제10조(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“상담복지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7조2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칙(제1240호, 2019.7.17.)

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15조2(위탁계약의 체결 등)**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
4. 민간위탁의 목적과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
5. 수탁기관의 의무·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

6. 계약 위반 시 책임

7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